

# 많이 하는 질문 Q&A

Q. 공공후견인을 직장생활과 병행할 수 있나요?

A. 네.

후견업무 진행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업무, 병원진료 동행 등 평일에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Q. 후견인 활동이 일을 하는 것인가요?

A. 공공후견인은 직업이 아닙니다.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기는 하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아닙니다. (단, 지역별 과세기준이 다름)

Q. 후견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기도 후견인 후보자로 위촉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서 후견인 후보자로 선발과정을 거친 후, 치매환자와 연결되어 활동이 시작됩니다. (후견인 후보자로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치매로부터  
건강한 삶,  
경기도가  
함께  
합니다.



## 이용 사례

### 사례.1

부인의 사망과 두 자녀의 외국 이민으로 홀로 계시던 피후견인은 뇌출혈로 1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았고 장기 요양 4등급으로 혼자 계시기보다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외부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피후견인이 희망하는 주간보호센터로 연계하여 생활 및 재활을 유지할 수 있었음.

또한 이로인해 피후견인의 일상생활이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

### 사례.2

혼자 지내던 86세의 치매 어르신은 자녀가 1명 있지만 단절된 관계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상황이었음.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은행업무, 물건 구입 등 여러 사무 수행에도 제한이 많았음.

그런 어르신에게 찾아온 후견인은 어르신의 기초연금, 수급비 등을 관리해주고 공과금, 세금납부를 지원해드렸음. 또 주거급여의 재산청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 계약을 체결해 어르신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음.

후견인은 소외계층인 치매 어르신을 도우며 인생 2막을 얻을 수 있었음.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존엄성 보장 및 인권 향상을 위해 경기가 언제나 함께 합니다.

< 한눈에 알아보기 >



치매공공후견사업  
신문고



치매공공후견 상담 및 문의  
031-271-7021 경기도광역치매센터

# 치매 공공후견 사업안내

새로운시작,  
경기도광역치매센터가  
함께합니다.



## 치매 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 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입니다.

\* 단,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3년)

\* 본 사업은 성년후견과는 다르며 가족을 후견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 어떤 절차를 거칠까?

- ① 공공후견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환자를 발굴 하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 및 신청해요.
- ② 공공후견 지원 대상자 선정  
치매안심센터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환자의 공공지원여부를 결정해요.
- ③ 치매환자-후견인 연결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서 선발된 공공후견인 중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후견 인을 찾아 1:1로 매칭해요.
- ④ 후견심판청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후견심판청구서류를 준비하고,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위 서류를 바탕으로 (가정) 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제출해요.
- ⑤ 후견활동 시작  
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아 활동하고, 치매안심센터 및 법원 의 관리감독을 받아서 치매환자를 지원해요.

## 치매 공공후견인은 누구인가?

치매 공공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 ▶ 지원자격

-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민법」 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자, 형기중 에 있는 사람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치매공공후견인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의 선발 전형과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선발된 후견인 후보자는 양성교육 이후 위촉을 통해 후견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활동비

-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피후견인 1인 월 20만원, 최대 3인일 경우 40만원 까지)

## 어떤 지원을 받을까?

### ▶ 지원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 2순위 -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 3순위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 피후견인(치매환자) 지원 내용

- ① 통장 등 재산관리
  - ② 관공서 등 서류 발급
  - ③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 ④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 ⑤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 수술에 대한 동의는 제한되며, 강제요양원 입소 불가

